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기량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 현실화 및 다양한 차종의 택시운송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 축간거리가 2.895미터 이상의 승용자동차

제3조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”를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으로, “대하여 2021년 1월 1일”을 “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조제 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차량의 종류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, 태양광 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,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차량의 종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고급형 택시운송사업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	6. ----- ----- -----
가.·나. (생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다. 하이브리드자동차이면서</u> <u>축간거리가 2.895미터 이</u> <u>상의 승용자동차</u>
제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 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 」에 따라 이 고시에 <u>대하여 2021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까지</u> 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	제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----- ----- ----- <u>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</u> <u>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 에 따라 2024년 7월 1일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 -----

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 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